

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2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 이유

-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
- 노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·여가선용 등의 제공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설립됨에 따라
- 동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주요 골자

- 『노인종합복지회관』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, 노인사회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등
- 이용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함(안 제4조)
 - 이용대상 : 충청북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
 - 사용료 : 강당 30,000원(주간 1회 2시간) 등
- 노인복지회관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함(안 제5조)
 -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,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 등
-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운영관리하되,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-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운영위원회」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 - 구 성 : 7인 이내(위원장 : 사회복지국장) - 임기 : 3년(연임 가능)
-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근거 법령

-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
-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

따로붙임

1.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(안) 1부
2. 참고자료(근거법령내용) 1부. 끝

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, 교양,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(이하"노인복지회관"이라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노인복지회관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-6번지에 둔다

제3조(업무 및 기능)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
2. 노인사회교육 및 복지후생사업
3. 노인의료재활사업
4.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사업

제4조(이용대상 및 사용료) 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강당등 일부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등의 감면)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용코자하는 경우
2.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등의 사업인 경우
3.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운영관리) ①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관장은 가정복지과장이 겸임한다.

②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 할 수 없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을 둔다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,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시설관리)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책임자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. 단,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9조(관리비등 보조) 도지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노인복지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10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